

契 約 書

안양 석수2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토목 및 인종관련 별도용역)

2024.12

(주)야손건축사사무소

협력업체외주계약서	등록번호	
	계약분야	별도용역
	No.	1

용역명	안양 석수2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대지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1일원		
대지 면적	11,833.00 m ²	(3,579.48 평)	
연 면 적	55,515.93 m ²	(16,793.57 평)	
용역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설계 완료시 까지		
계약 금액	일금 오억팔천만 원	(₩580,000,000)	V.A.T.별도
기타 사항			

위의 모든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양석수2지구 B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한다)와 ㈜야손건축사사무소(이하 "을"이라한다)는 토목 및 인증관련 별도용역 수행에 필요한 적법한 모든조건을 구비하고 "갑"의 회계규정과 조직 및 특성, 정부의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12

"갑" 소 재 : 경 기 도 안 양 시 만 안 구 삼 막 로 48,
2 층 (석 수 동)
상 호 : 안 양 석 수 2 지 구 B 지 역 주 택 조 합
사업자등록번호: 140-82-81383
조 합 장 : 최 양 레 ()



"을" 소 재 : 서 울 시 강 남 구 봉 은 사 로 439, 9 층
상 호 : (주) 야 손 건 축 사 사 무 소
사업자등록번호: 211-88-82158
대 표 이 사 : 박 병 록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록번호

계약분야

별도용역

No.

2

제 1조 (총칙)

"갑"이 "을"에게 의뢰한 외주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을"이 "갑"에게 청구 할수 있는 보수의 기준과 "갑"과 "을"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그 업무를 정하고,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등의 기준을 정함에 있으며, "갑"과 "을"은 본 기술용역 계약서 (이하"계약서"라 한다.)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신의와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조 (의무)

"갑"은 설계자의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제시하고 "을"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서 내용에 명시된 각 해당업무를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 3조 (자격)

"을"은 관련 법령에 적합한 자격자이거나 등록업체 이어야 한다.

제 4조 (하청 및 양도)

"을"은 "갑"의 동의없이 용역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5조 (업무범위)

- ① 업무범위 및 업무 내용은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에 의한다.
- ② "을"은 제①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타 법령, 조례, 관습 등에 따른 설계용역은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을"의 기술자문을 필요로 할 때에 언제라도 "을"에게 자료나, 설계도서 및 기술적인 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설계도서의 검수 및 납품)

- ① "을"은 작성된 설계도서등을 "갑"이 요청한 기일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설계공정별로 도서를 납품받아 도서검수후 다음 설계공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 ③ "을"은 "갑"의 매뉴얼 및 설계도서 검수기준에 따라 도서검토를 받아야한다.
- ④ "을"은 설계도서의 검토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한 기간내에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재검토를 득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갑"에게 완성된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서 제공한 결과물로 "갑"에게 계약기간 내에 납품한 후 "갑"에게 납품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⑥ 천재지변, 관련법령의 변경, 심의 또는 인. 허가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 설계도서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설계 변경)

- ①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설계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변경된 설계 도서를 작성한 후 필요에 따라 관계 관청에 설계변경허가를 신청, 취득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설계변경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제 8조 (보수의 지급)

- ① "을"은 단계별 설계용역을 완성한 후 "갑"의 검사를 필한 때에는 기성시기에 따라 "갑"에게 대가를 청구하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 ② "갑"이 "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용역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어음 수령시 어음만료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갑"은 필요한 의해 "을"에게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하여, 추가로 발생해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갑"과 "을"의 합의 하여 별도로 정한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록번호

계약분야

No.

별도용역

3

제 9조 (저작권)

본 납품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0조 (하자보증)

"을"은 작성한 도서에 대하여 용역기간 종료후 3년 동안의 책임을 지며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그 손해액을 보상한다.

제 11조 (이행지체)

-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약정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 ② "을"이 약정기간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한다.
- ③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②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 ⑤ 상기②항 및 ④항의 적용시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2.5/1,000으로 한다.

제 12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이 업무중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15일전에 업무포기 각서와 함께 그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새로이 계약된 업체에 업무의 인계인수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진행된 업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용역비를 청구치 못한다. 이로인해 "갑"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을"은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13조 (계약변경)

- ① "갑"은 필요한 경우 "기술용역계약서 특수조건"에 기재된 용역내용을 보완, 변경, 삭제, 추가 하는 등 수정(이하 "수정"이라한다.)할 것을 "을"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과업의 성질상 "갑"의 요구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거나 공사예정금액의 변경, 물가연동 및 용역기간의 변경 등에 기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기로 한다.
- ③ 용역수행 기간 중 "갑"측의 공동도급에 의한 "갑"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갑"이 용역수정계약을 요청할 경우 "을"은 용역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수정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갑"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 업무진행이 과다 지연되었거나 인허가 변경 승인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시, "갑"과 발주자 간의 협의 내용에 준하여 "을"과 협의하여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 ⑤ 용역수행 범위가 변경될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용역비를 조정한다.

제 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폐지)

"갑"은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사유없이 갑의 요청한 기일내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지 않을 때
- ② 계약기간 일까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때
- ③ 용역이 예정과 같이 진행되지 않거나, "을"이 업무에 소홀하여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④ "을"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입찰 서류가 발주자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 ⑤ 용역수행에 있어 근면, 성실하지 못하거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⑥ "을"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⑦ 기타의 본 계약 조항에 위배하였을 때

기술 용역 계약 일반 조건

등록번호

계약분야

No.

별도용역

4

제 15조 (용역수행중 배상책임)

“을”은 아래 각 호의 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① “을”이 수행한 용역의 하자로 인한 “갑”이 입은 손해
- ② “을”이 “갑”에게 인도한 모든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인한 “갑”의 손해
- 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의 수행을 포기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 인한 “갑”의 손해
- ④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갑”의 요구일까지 성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갑”이 이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
- ⑤ “을”은 용역수행 중 “을”자신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비롯하여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인 피해를 “을”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 ⑥ “을”은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⑦ “을”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갑”의 동의하에 “을”이 선임한 하청업자를 포함하여, 이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을 사용할 시 당해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갑”이 용역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을”은 즉시 그러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 16조 (용역업체의 면책사유)

“을”이 업무를 함에 있어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명기하는 행위는 “을”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 ① 관계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임의로 업무를 계속 진행하게 하거나 “갑”의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② 업무가 상당히 진척된후 발생한 관계법령등의 개폐로 이미 진행된 작업이 못쓰게 된 때 발생하는 손해

제 17조 (천재지변)

천재, 폭발, 태풍, 호우, 전쟁 등의 천재지변이나 법률적 제재 또는 계약당사자간의 권한과 능력 이외의 사정으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 손실에 대하여는 “갑” “을” 상호간에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조 (기밀의유지)

본 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획득한 업무내용이나, 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을”은 철저한 기밀보장을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0조 (이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등록번호	
계약분야	별도용역
No.	5

[1] 업무범위

- 1) 토목분야
- 2) 경관분야
- 3) 교통분야
- 4) 인증분야

[2] 설계 업무내용

- 1) 토목분야
 - 현황측량, 흙막이 설계, 지질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 심의 및 대관업무
- 2) 경관분야
 - 경관심의 보고서 및 인허가 대관업무
 - 경관 부분별계획 및 종합계획(경관기본구상 및 기본방향과 현황분석 등 포함)
- 3) 교통분야
 - 교통영향평가 작성업무 및 인허가 대관업무
 - 개선안 시행계획(교통수요조사에 따른 계획 등)
- 4) 인증분야
 - 친환경주택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질오염총량제, 범죄예방환경설계, 소음예측평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각 인증에 따른 도서 작성 및 인허가 협의

[3] 제출도서

용역별 각종 서류 및 도면, 보고서를 3부씩 제출한다.
또한 “갑”의 도서 검토에 필요한 도서는 필요시 별도로 제출한다.

[4] 특기사항

- 1) 도면작성에는 “갑”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수정완료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2) 허가 접수전 각1회 중간검수를 실시한다.

[5] 업무에 따른 용역비

단 계	금 액 (원)		비고
토목분야	일금 이억이천삼백만 원	(₩223,000,000)	견적서 별도첨부
경관분야	일금 구천만 원	(₩90,000,000)	견적서 별도첨부
교통분야	일금 일억삼천만 원	(₩130,000,000)	견적서 별도첨부
인증분야	일금 팔천칠백만 원	(₩87,000,000)	견적서 별도첨부
건축관리분야	일금 오천만 원	(₩50,000,000)	
합 계	일금 오억팔천만 원	(₩580,000,000)	

[6] 대가지급

단 계	금 액 (원)		비율	지급시기
1차	일금 일억일천육백만 원	(₩116,000,000)	20.0%	계약시
2차	일금 일억일천육백만 원	(₩116,000,000)	20.0%	도서완료시
3차	일금 일억칠천사백만 원	(₩174,000,000)	30.0%	접수시
4차	일금 일억칠천사백만 원	(₩174,000,000)	30.0%	완료시
합 계	일금 오억팔천만 원	(₩580,000,000)	100.0%	



안양 석수2지구 지역주택조합
토목 설계 용역

과업수행견적서



2024. 10.

(주) 다 산 이 엔 지



[illegible]

¥90,000,000

용역계약서

용역명 : 석수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용역
품셈가 : 일급 일역육천만원정 (₩ 160,000,000)
견적가 : 일급 일역삼천만원정 (₩ 130,000,000)

※ 부가세 별도, 표준품셈가의 80% 적용
※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021. 2. 15, 국토교통부

2024년 10월



(주)건우티에스

대표이사 : 임 익 철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5, 201호(만수동 만수빌딩)

교통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211번길 30, 202호

TEL : 031) 477-9709, FAX : 031) 477-9710



총괄설계내역서

총괄설계내역서													
종별	규격	수량	단위	총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석수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용역													
1. 직접인건비													
가. 시론					3,244,318		3,244,318						
나. 교통환경 조사분석					11,177,616		11,177,616						
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8,763,627		8,763,627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8,388,170		28,388,170						
마. 개선안 시행계획					3,556,433		3,556,433						
바. 성과품 작성					5,375,162		5,375,162						
소 계					60,505,327		60,505,327						
2. 제 경비													
직접인건비 × 110%					66,555,860						66,555,860		
3.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25,412,237						25,412,237		
4. 직 접 경 비													
가. 출장비					400,000						400,000		
나. 현장조사비					6,071,512						6,071,512		
다. 성과품 제작 및 인쇄비					4,599,000						4,599,000		
소 계					11,070,512						11,070,512		
품셈가 합계					163,543,936								
건 적 금 액				₩	130,000,000		(부가세별도, 품셈가의 80% 적용, 심면단위이하 절사)						



친환경견적서

(주)아손건축사사무소

귀중



참 조

소 장 님

대표이사 :

이 종 택

견적일

2024년 10월 10일

담당자 :

총무부 (02-879-2146)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1. 용역 대상 및 기간

용역명	안양 석수2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1일대)	기간	계약시점 ~ 인증 완료 시
-----	--	----	----------------

2. 용역 범위

구분	세부내용	비고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주거부분(사업승인)	- 사업승인 완료를 위한 컨설팅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 도서 작성, 관계부처(검토기관) 협의 및 보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5
2. 에너지절약계획서(건축부문) * 비주거부분(근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 건축허가 완료를 위한 컨설팅 [비주거(대형)] - 도서 작성, 검토기관 협의 및 보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3. 수질오염총량관리	- 건축허가 완료 위한 컨설팅 - 수질오염총량검토서 작성, 관련부서 협의 및 보완	환경부훈령 제1631호
4. 범죄예방 환경설계 (범죄예방 건축기준)	- 범죄예방 건축기준 만족을 위한 컨설팅 - 범죄예방 환경설계 계획서 작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5. 공동주택 소음예측평가	- 단지내 소음 예측평가 보고서 작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6. 녹색건축 (예비)인증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3군]	- 목표등급 취득을 위한 컨설팅 [복합 건축물 : 그린4등급 이상] - 도서 작성, 평가기관 협의 및 보완 / 인증서 획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7.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3군]	- 목표등급 취득을 위한 컨설팅 [주거 / 비주거 : 3등급 이상] - 도서 작성, 평가기관 협의 및 보완 / 인증서 획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1호

(주)기 광 엔 지 니 어 링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28, 이앤씨벤처드림타워 6차 908호 / TEL: 02)879-2146-7, FAX: 02)875-4270 / E-mail: kkeng@kkeng38.co.kr

친 환 경 건 적 서

3. 견적 금액 [평가(검토) 수수료 제외]

구 분	규모		단가	금액[원]	비 고
	[㎡]	[세대수]	[원/평]		
* 건축허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 주거부분(사업승인)	55,515.9330	335 세대	1 식	13,000,000	평가대상 :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건축부문) * 비주거부분(근생, 부대시설, 공공시설)	55,515.9330	335 세대	1 식	10,000,000	평가대상 : 비주거(대형)
수질오염총량관리	55,515.9330	335 세대	1 식	9,000,000	평가대상 : 한강수계-안양A
범죄예방 환경설계	55,515.9330	335 세대	1 식	7,000,000	평가대상 :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 소음예측평가	55,515.9330	335 세대	1 식	10,000,000	평가대상 : 단지내 소음 예측평가
* 인증용역					
녹색건축 (예비)인증 * 2건 : 공동주택 + 일반건축물	55,515.9330	335 세대	1 식	21,000,000	일반(그린4)등급 이상 (평가대상 :복합 건축물 (공동주택+일반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 2건 : 주거 / 비주거	55,515.9330	335 세대	1 식	17,000,000	3등급 이상 (평가대상 : 주거/비주거)
용역비 합계 (VAT 별도)	일금	팔천칠백만			원
	₩	87,000,000			원 (평가수수료 제외)

4. 견적 제외

- 상기용역 외 추가용역 별도. - 인증기관 평가수수료 별도. - 본인증 제외.
--

※ 상기견적금액은 계획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계약 시 관련법규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라 용역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기 광 엔 지 니 어 링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28, 이앤씨벤처드림타워 6차 908호 / TEL: 02)879-2146-7, FAX: 02)875-4270 / E-mail: kkeng@kkeng38.co.kr

통장사본 출력

NH Bank

NH Bank

든든한 민족은행 - 농협!

계좌번호 351-0902-077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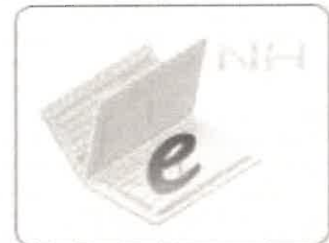
예금종류 보통예탁금

(주)아송건축사사무소 님

가입하신 날 : 2016/09/06

계좌관리 점포 : 영등농협 삼성로지점(T:02-3442-6417)

통장발행 점포 : 인터넷뱅킹



농협

인터넷통장사본 발행일 : 2021년 11월 10일

전자금융 이용안내

▶ 인터넷뱅킹

- banking.nonghyup.com
- 각종조회, 이체, 예·적금/편도신규, 대출실행

▶ 텔러뱅킹

- 전국 어디서나 1588-2100
- 지역번호 없이 1544-2100
- 해외에서 이용시 82-2-3704-1004

안내 말씀

▶ 저희 농협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 통장의 거래에는 저희 농협의 예탁금거래기본약관 및 해당 예탁금약관이 적용되며, 약관은 언제나 저희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장, 도장 등을 분실하거나 주소, 연락처 등이 바뀌면 바로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1588-2100, 1544-2100)로 알려 주십시오
3. 통장, 도장은 따로 안전하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꼭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인터넷뱅킹에서 제공해드린 통장사본입니다.

본 사본은 고객보관용으로 어떠한 용도의 증명서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요청하신 대로 위와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 본 확인증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농협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211-88-82158

법인명(단체명) : (주) 야손건축사사무소

대표자 : 박병록, 유재유

(각자대표)

개업연월일 : 2012년 08월 15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4937160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39, 9층(삼성동, CC빌딩)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39, 9층(삼성동, CC빌딩)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건축설계,감리

발급사유 : 재발급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여부 : 여()부(✓)

전자세금계산서전용전자우편주소 : yason1111@hometax.go.kr



전화 : 02-519-1000



팩스 : 02-519-1007

메일 : ksh1324100@naver.com

담당 : 김선희 실장

2024년 01월 11일

삼성세무서장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상 호	(주)야손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박 병 록

“안양 석수2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겠음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끝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4년 12 월 09 일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2158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439
9층,(씨씨빌딩)

상 호 : (주)야손건축사사무소

대표자 : 박 병 록 (인)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4937160



상 호 : 주식회사 야손건축사사무소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39, 9층(삼성동, 씨씨빌딩)

대표이사 박병록

(631125-1634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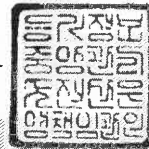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2130019141001030111110452006211703F9T4M1K1D1KOL1S1 8

발급확인번호 BAYM-QMSX-JFX2

- 1/1 -

